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825 호

1981. 2. 17

시 보

차 례

◎ 조	배		
제 1491 호 :	서울특별시출길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	3
◎ 규	칙		
제 221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위원회규칙폐지규칙	4
제 222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당직근무규칙	4
제 223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법률고문운영규칙	8
제 224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및산업체의교육비부담에관한규칙	9
	증개정규칙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24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허가변경	10
제 35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10
제 3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1
제 37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12
제 3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13
제 39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지정	13
제 40 호 :	도시계획고도지구지적고시	15
제 41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지정	15
제 4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7

◎ 공 고

제 36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18
제 37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38 호 :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38
제 39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일부준공공고	38
제 40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39
제 41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39
제 42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40
제 86 호 (도봉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40

◎ 사 명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품질관리 추진협의회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①
198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491 호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
협의회운영조례

제 1 조 (설치) 품질관리운동의 조직적인 추진으로 품질관리 제제물 전산업에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시책을 조사, 연구,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에 품질관리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관련시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응한다.

- 1. 품질관리추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 품질관리 운동제도, 제동 및 홍보협의

3. 기타 품질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토의 및 해결 방안 모색

제 3 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업과장, 근로과장과 국립공업시험원의 부장, 한국공업표준협회의임원, 서울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품질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2항에 규정된 이외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의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②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할 안전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
고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판장
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
건조사, 연구

2. 협의회 또는 그 위원장이 위
임 또는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조사 및 협의

③ 실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표준제장으로 한다.

제 8 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
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
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
위원회 규칙 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1981.2.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 221 호

서울특별시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
위원회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규칙 제 100
호 서울특별시 국가기술자격 검정관
리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당직근무
규칙은 이에 공포한다.

1981.2.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

◎교육규칙제 22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당직근무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 사업소 및 각급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당직 근무자에 관하여는 공무원당직 근무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기관별 당직 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그 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위, 운전원등을 따로 당직 근무자로 명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중 책임자는 당직 명령을 받은 자중 상위 직급자로 하며, 당직 근무자를 지휘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은 필요에 따라 공무원당직 근무규정 제 8조 제 2항 및 제 3항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의거 당직자를 증감할 수 있으며 여직원은 숙직근무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당직명령) ①기관장은 일, 숙직별도 구분하여 윤번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 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②당직 봉지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당직 명령에 의하여 본인에게 봉지 하여야 한다.

제 5 조 (당직변경 및 유예) ①당직

명령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 2일 전까지 당직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후임 전임자가 전임자의 근무일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착임한 날로부터 7일간은 면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당직근무를 유예할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휴무 하는 자는 그 기간
2. 교육, 강습, 파견, 휴가 및 관의 출장으로 그 계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그 기간
3. 기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6 조 (당직근무 신고)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 책임자는 당직을 주관하는 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수시 청사내외의 순찰을

통하여 자체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도난, 방치 및 경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1. 방법, 방화, 기타 보안상에 점검 확인
2. 근무 시간의 잔유 근무자의 복무 확인 및 통제
3.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4. 간소복을 착용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착용
5. 문서의 수발 및 인계와 국기의 게양 및 파기
6. 당직 근무일지 작성
7. 청사내외를 매 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
8. 당직 근무중 취침금지 다만,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9. 당직실내에 부착된 유인물 숙독
10.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 8 조 (문서 또는 물품 접수처를) 당직근무자가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문서, 전보, 금품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직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근무 종료후 수관부서 또는 차번자에게 인계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내용의 문서나 전보등은 즉시 수신인 또는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2. 문서의 내용상 접수시간의 기록을 요하는 문서에는 접수시간을 봉투에 기입하여 당직책임자가 날인한다.
3. 당직자가 공무에 관한 전화통화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일지에 통화내용을 기입한 후 공문서처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문서물품 발송처리) 당직자가 문서전보 금품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보는 그 원안에 발송시간을 기입하고 문서금품을 우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 원일 시작을 기입 날인한 후 문서발송 대장에 기입한다.
2. 1호에 의하여 발송된 문서의 원안은 익일 주관부서 또는 처번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제 10 조 (비상소집 의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기관장으로 부터 비상소집의 명이 있을 때에는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즉시 연락을 취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p>제 1 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명령부 3. 직원주소록 4. 직원비상연락망 5. 당직근무규정 6. 비상열쇠보판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순찰시계 8. 각실과의 열쇠 9.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0. 비상용품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81.2.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별지제 1호저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당 직 명 령 부</u></p>	

기 관	당직월일	일요인	구 분	소 속	지 위	성 명	비 고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법률고문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기피하거나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p>
<p>1981.2.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인</p>	<p>제 3 조 (정원) 법률고문은 정원을 7 인이내로 한다.</p>
<p>◎ 교육규칙 제 223 호</p>	<p>제 4 조 (위촉) ①법률고문은 서울특별 시내에 거주하고 교육행정운영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된 다.</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법률고문운영규칙</p>	<p>②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을 두고 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5 조 (회의) ①교육감은 법률사항을 토의 자문을 받기위하여 법률고문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 2 조 (직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사 항을 처리한다.</p>	<p>②법률고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1.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위원회'라 한 다)에 대한 법률사항의 지도와 협조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 송사건의 수입 3. 기타 교육감이 위임하는 법률사 항</p>	<p>제 6 조 (보수) ①법률고문에 대해서 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p>
<p>②법률고문은 전항 자호의 직무를</p>	<p>②전항의 보수의 종류 및 지급기준 은 따로 정한다.</p>
<p></p>	<p>부 칙 (8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1.2.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제 4 조 (수당지급) 중 제 4 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한다.

◎ 교육규칙 제 224 호

부 칙 (81.2.12)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이 규칙은 1981.1.1 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특별학급 교직원 수당지급액 및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근무수당	교 장	1. 교무, 학생주임과 학급담임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사 수당과 학급 담임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2. 강의수당은 실제로 수입을 담당한 강의시간수에 의거 지급하되 특별학급 전담교사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 감	
	사무직원	
	고 용 원	
주임교사수당	월 10,000 원	3. 연구수당은 특별학급 전담교원(전담양호교사포함)에게만 지급한다.
학급담임수당	월 30,000 원	
강 의 수 당	시간당 3,000 원	
연 구 수 당	월 40,000 원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34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5 호 (73.4.24) 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2.13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가리동 535 번지일대
- 나. 명칭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다. 면적 : 366,230 평
- 라. 사업시행자 :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최명현
- 마. 사업기간 : 당초 76.3.1-80.12.31 변경 76.3.1-81.12.31

◎ 서울특별시고시 제 35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 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07 호 (79.12.11) 및 고시 제 7 호 (80.1.11) 로 도시계획시설 (소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서구화곡동 323-9 외 14 필지 3296 ㎡ (997 평)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2.1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서구화곡동 323-9 외 14 필지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명칭 : 강서중앙시장
- 3. 사업의규모 : 3,296 ㎡ (997 평)
- 4.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년월일 : 허가후 7 일 이내
 - 나. 준공예정일 : 착공후 1 년 이내

5.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강서구화곡동 323-9 광덕개발주식회사대표 김한규
 6. 위치 및 계획영역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상계도면 : 별첨 (오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0 호 (79.10.15) 로 .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2. 1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	선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 m	180 m	구로동 570	구로동 553	폭원확장
변경	중로	3		12	180	"	"	
신설	소로	2	1	8	260	"	" 551	
"	"	"	2	"	160	구로 551	구로 575	
"	"	"	3	"	150	" 476	" 산60	
"	"	"	4	"	120	" 486	" 490	
"	"	"	5	"	150	" 454	" 458	
"	"	"	6	"	240	" 420	" 448	
"	"	"	7	"	160	" 425	" 446	
"	"	"	8	"	140	" 391	" 708	
"	"	"	10	"	200	가 리 봉 2	가 리 봉 13	
"	"	"	11	"	200	가 리 봉 9	"	
"	"	"	12	"	180	가 리 봉 92	" 106	
"	"	"	13	"	100	구로 317	구로 761	
"	"	"	16	"	30	" 155	" 154	
"	"	"	17	"	150	" 123	" 125	
"	"	"	18	"	30	" 123	" 12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19	8 m	50 m	구로 118	구로 73	
"	"	2	20	8	160	" 118	" 123	
"	"	3	1	6	130	" 597	" 593	
"	"	"	2	"	120	" 512	" 513	
"	"	"	3	"	100	" 706	" 706	
"	"	"	4	"	230	가리봉 25	가리봉 30	
"	"	"	5	"	"	구로동 166	신도림 1063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37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 호 (78.7.5) 및 동고시 제 348 호 (79.7.28)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492 호 (79.11.26) 로 시행자 명의 변경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계획을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2. 16.

서울특별시관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양재동 539번지의 25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부산시 동구 대창동 3가 61번지(주)천일여객 자동차

대표 : 박 남 수

부산시 동구 범일동 252-767

(주)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 박남규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공 : 79년 11월 20일

준공예정일 : 80년 12월 31일

변경준공예정일 : 81년 12월 31일

마. 수봉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 명세서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 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p>	<p>10)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2.17 서울특별시 장</p>
---	--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신목중학교	강서구신정동 88-3 일대	15,681	
신설	신목국민학교	강서구신정동 281-2 일대	10,119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m	98m	신정동 281-48	신정동 281-48	
변경	"	"	"	"	"	"	폐지
기정	"	"	"	132	신정동 86-8	신정동 88-나	
변경	"	"	"	132	"	"	폐지
신설	"	"	6m	98m	신정 281-나1	신정동 281-2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39 호</p> <p>아파트지구개발사업자지정</p> <p>1.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 호 (76.10.2)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p>	<p>된 영동아파트지구 (제 3 - 2 주구) 일부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21 조 동법시행령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를 당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기 고시 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p>
---	--

<p>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1. 2. 17 서울특별시</p> <p>○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내역</p> <p>가. 사업시행자 : (주)한양주택 배종렬</p> <p>나. 사업시행구역의 표시 : 강남구 서초동산 189-1 일원 (아파트지구 제 3 - 2 지구 일부)</p> <p>다. 사업시행면적 : 7,322.4 평</p>	<p>라. 사업계획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아파트건립 • 사업규모 : 아파트 25-45 평형 312세대 • 사업비 : 11,130,048 천원 • 사업기간 : 1981.2.17 ~ 1984. 2. 28 • 관계도면열람기간 : 81.2.20 ~ 81.2.28(7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	--

토 지 조 서

동명	지 번	환지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서 초 동	산 189-3	323	영등포구여의도동 1-885	(주)한양주택
"	산 189-1	1,617	"	"
채 비 지	368-3	2,270	"	"
반 포 동	454-1	(가) 93 (나) 250.3	종로구와룡동 86	신 봉 하
"			용산구용문동 38	신 춘 란
"	455-3	223.2	성동구구의동 41	김철웅외 3인
"	454-2	445.6	강남구서초동 651	김 도 영
"	455-5	368.8	용산구보광동 201-3	원 상 연
채 비 지	368-1	1,072.4		서 울 시
"	368-2	659.1		"
제	1° 필지	7,322.4		

◎서울특별시고시제 40 호

도시계획고도지구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437 호 (80.12.30)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고도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장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2. .

서울특별시장

고 도 자 구 조 서

구 분	위 치	연 장	면 적	최 고 한 도
최고고도지구	용산구후암동 30- 한남동산 10번지	2,700 m	135,000㎡	순환도로면이하 1.5 m (최고고도 제한)

◎서울특별시고시제 41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정

1. 건설부고시제 131 호 (76.8.21)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256 호 (76.10.2)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강남구 반포동 일부지역 (제 1 - 3 주구) (부록: 별첨) 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제 21 조 동법시행령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지를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왕 인람에 공한다.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정내역

가. 사업시행자: 한신공영(주)
대표 김 형 중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강남구 반포동 266-1 번지 일원 (제 1 - 3 주구) (별첨목록) 3,188.6평

다.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명: 아파트 건립
- 사업규모: 아파트 25평형 (분양) 130세대
- 사업비: 2,925,000 천원
- 사업기간: 1981.1.-83.12.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81.2.20 - 81.2.28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45-16 제 225호

시

보

1981.2.17

동 명	지 번	종전면적	지번급부호	환지면적	소 유 자
잠 원	1-31	670	40 가	93.8	한 신 공 영
"	142-4	1,920	40 아	115.6	"
반 포	423	512	40	259.8	"
"	254-2	135			"
"	252-4	134			"
"	252-3	704	40	738.1	"
"	255-9	156			"
"	254-1	6			"
"	229-2	455			"
"	228-1	20	40	952.2	"
"	234-2	305			"
"	233-3	795			"
"	261-1	8			한신공영지분 1/2
"	261-2	87	40	560.4	"
"	261-3	184			관악구상도동 154
"	262-3	632			강변무지분 1/2
체비지	40-1		40	178.9	서울특별시
"	43-1		40	212.3	"
"	40-3		40	41.5	"
					한신공영소유
					2,475.7
					바인소유 712.9
					계 3,188.6
					한신공영소유 비율
					77.64%

<p>◎서울특별시고시제 42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440 호 (79.10.15.)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p>	<p>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2.18. 서울특별시장</p>
--	---

지 적 승 인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총 점	비 고	
산설	소로	1	2	10	260 m	영등포 618	영등포 602		
		2	32	8	150	도림 157	도림 161		
			31		130	" 77	" 78		
			34		50	영등포 620	영등포 618		
			35		200	" 631	" 620		
			33		260	도림 226	도림 156		
			28		240	신길동 356	신길동 325		
			29		120	" 312	" 347		
			27		130	" 342	" 336		
			25		60	" 405	" 404		
			24		50	" 410	" 415		
			21		130	대림 1050	대림 1057		(구:신도림)
			22		260	" 745	" 760		
			30		20	신길 289	" 81		
	23		100	" 410	" 750				

* (도면생략) 끝.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6 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취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제 3 호에 의거 전기
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1. 2. 14

서울특별시 장

가. 다 음

업 제 명	소 재 지	대표자	허가번호	조치내용	취소사유
영성전열공업사	성수 2 가 277-68	사의순	1-3-43	허가취소	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
삼화전기산업사	1 가 656-392	김종열	가-4-11	"	"
신일전기공업사	2 가 273-32	김중현	1-5-9	"	"
삼형정밀공업사	2 가 277-50	김기문	1-7-152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 호

도시계획 사업 (공용의청사,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8 호 (80.1.29)
및 건설부고시제 145 호 (78.6.15)
로 각각 시설 결정된 공용의청사
및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
시계획을 수립, 인가하고자 도시계
획법제 25 조 2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시킨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2. 16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강남구서초동 967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및 도로)
3. 사업의 규모
공용의청사 : 32,120 평
도 로 : 400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제 1 차산업 (토지 및 건물보상)
가. 사업착수일 : 81.3
나. 완료예정일 : 82.12
6. 차용 또는 수용할 토지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의 주소, 성명

토지조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 토지조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중 전 의 토 지				관	지 예 정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평)	구획번호	지 번	면적(평)
강남구서초동	951	답	348	444	951	175.2
"	953	묘 지	298	"	953	162.9
"	산182-2	임	462	"	산182-2	300.9
"	952	답	250	"	952	147.8
"	954	전	566	"	954 (가)	313
"				"	954 (나)	95
"	955	"	396	"	955	316.9
"	956	"	105	"	956	55.1
"	958-4	답	246	"	958-4	128.6
"	958-1	"	196	"	958-1	103
"	956-3	"	202	"	959-3	105.8
"	958-5	"	150	"	958-5	78.4
"	956-2	전	185	"	956-2	97.2
"	산181-2	임	460	445	산181-2	268.6
"	181	"	230	"	산 181	138.9
"	960-1	전	323	"	960-1 (가)	190.9
"	960-5	"	173	"	960-5	102.7
"	960-2	"	140	"	960-2 (가)	95.4
"	961	"	179	"	961	100.3
"	962-5	답	414	"	962-5	235.7
"	962-1	"	166	"	962-1	94.8
"	971-13	"	283	446	971-13	149.9
"	971-15	"	190	"	971-15	100
"	971-14	"	159	"	971-14	84.2
"	968-2	전	221	"	968-2	164.6
"	969-1	"	153	"	969-1	91.6

소 유 자		익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광주시서구쌍촌동 971의 21	김 막 내		강남구청	압 류
중구남창동 46 의 13	유 익 상			
용산구한남동 1 의 17	오정근외 2			
마포구망원동 310 의 27	한 기 락			
관악구휴석동 173의 39	성 유 완			
중로구청진동 221	남 봉 금			
용산구청마동 3 가 112 의 1	오 동 제			
마포구동교동 179 의 35	윤 준 보		강남구청	압 류
강남반포동주공 A·T 231 동 403 호	최천익외 1			
서대문구연희동 119 의 9	장 재 훈			
마포구동교동 179 의 35	윤 준 보		강남구청	압 류
용산구청마동 3 가 119 의 1	오 동 제			
영등포구여의도동 1-45 시범 APT 16 동 91 호	정옥진외 3	경기도시흥군소래면신천리 98	최명환	청 구 권 가 능 기
서대문구녹번동 79 의 3	이 상 근			
성북구삼선동 1 가 144 의 2	진 흥 익			
강남구서초동 986 의 2	이 대 섭			
강남구반포동 536	윤 태 임			
성북구성북동 75 의 24	유명규외 2		강남구청	압 류
마포구합정동 101 의 3	안분순외 3			
서대문구북악천동 1 의 1298	심 상 기			
마포구신수동 309	김재철외 1			
마포구연남동 365 의 23	양 정 자		강남구청	압 류

45-22

제 825 호

시

보

1981.2.17

종 전 의 토 지				환 지 예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평)	구획번호	지 번	면적(평)
강남구서초동	969-2	전	152	446	969-2	91.2
"	962-6	답	305	"	962-6	173.4
"	968-1	전	180	"	968-1	124.2
"	산176-1	임	750	"	176-1	403.4
"	산176-21	"	570	447	산 176-21	311.2
"	산174-1	"	403	"	산 174-1	235.4
"	산174-3	"	395	"	산 174-3	224.4
"	987-10	대	192	"	987-10	131.3
"	987-2	"	39	"	987-2	24.3
"	987-3	"	58	"	987-3	57.2
"	987-4	"	88	"	987-4	55.8
"	987-6	"	19	"	987-6	
"	1013-3	답	142	703	1013-3	140
"	8		130			
"	1013-14	"	262	"	1013-14	135
"	1013-15	"	261	"	1013-15	134.4
"	산174-7	임	182	702	산 174-7	101.5
"	산172-3	"	1,006	"	산 172-3	488.5
"	산170-6	"	17	"	산 170-6	168.5
"			7			
"	산181-3	"	840	450	산 181-3	496.5
"	960-3	전	512	"	960-3	346.5
"	962-2	답	984	"	962-2(나)	172.1
				"	962-2(가)	44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성동구구외동 63의 26	신용철외 2			
강남구반포동 536	윤 태 임			
동작구등작동삼호 APT 11 동 607 호	권 준 안			
강동구잠실 2 동 APT 502 동 803 호	강철중외 2			
성동구금호동 2가 625의 4	김 인 기			
강남구압구정동 193-3 현대 APT 85 동 404 호	신 재 휴	중구충무로 4가 126의 1	야 세 아 종합금융	지 상 권 근저당권
서대문구충정로 2가 40	이 지 근			
강남구서초동 987의 2	허 승			
관악구흑석동산 91	송 갑 철			
용산구이촌동 301의 160	권중근외 1			
구로구개봉동 361의 15	변 매 자			
강남구반포동 23	김 정 식	강남구압구정동 193의 3	강남구청장	안 청 구 권 가 등 기
용산구원효로 4가 118의 28	현재혁외 1			
성 북구성북동 14의 16	김문섭외 2			
서대문구연희동 200의 28	정 규 삼			
	국			
영등포구여의도동 1-45시범 APT 16 동 91호	정옥진외 3	경기도시흥군소래면신천리 98, 최 명 환		청구권특기
중구산당동 349의 207	함 영 훈			
서대문구충정로 2가 40	이재근외 2			
서대문구충정로 2가 99의 15	이형근외 2			

중 권 의 토 지				관 지 예 경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면 적(평)	구획번호	지 번	면 적(평)
강남구서초동	962-9	답	300	450	962-9	183.8
"	962-8	"	227	"	962-8	138.6
"	962-3	"	189	"	962-3	115.3
"	962-7	"	205	"	962-7	125
"	966	"	442	449	966	251.7
			(1,500)			
"	산 176-3	임	400	"	산 176-3	211.3
"	963	답	1,696	451	963	1,049.2
"	산 176	임	490	"	산 176	307.6
"	965	답	485	"	965	} 692
"	964	전	634	"	964	
"	987-1	대	75	447	987-1	69.7
강남구반포동	403-1	전	278	444	서초동 403-1	82.2
"	426-2	"	224	445	" 426-2	54.2
"	394-2	"	668	445	" 394-2	156.7
"	388-1	"	310	447	" 388-1	85.2
"	403-2	"	719	703	" 403-2	102
"	406-2	"	306	"	" 406-2	15.8
"	401-2	"	491	"	" 401-2	127.5
"	407-2	"	147	702	" 407-2	75.5
"	385-23	"	103	449	" 385-23	52.7
"	385-29	"	97	"	" 385-29	52.8
"	산 83-17	임	100	"	" 산 83-17	69.5
"	395	전	459	446	" 395	124.5
강남구서초동		제비지		444	444-1	98.8
"		"		445	445-1	60.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성동구 광장동산 21 워커히 APT 12 동 404	최 운 지			
강남구 서초동 1072	박 춘 산			
관악구 노량진동 205의 97	신 명 철			
성동구 광장동산 21 워커히 APT 12 동 404 호	최 운 지			
중구 남창동 46의 13	유 익 상			
중구 북정동 11	이충근외 1			
중구 신당동 432의 778	이선중외 1			
강동구 잠실 2동 502의 803	강철중외 2			
강남구 서초동 986	이 영 복	관악구 흑석동 29의 41	홍 남 예	가등기
" " 986의 1	이 대 성		강남구 청암	류
용산구 이촌동 301의 92	박 상 근			
강남구 압구정동산 16의 26	엄 금 순			
중구 신당동 429의 17	허 희 철			
마포구 성산동 140의 3	차애옥외 1			
강남구 관포동 466	돈 회 선			
" " 486	김 주 익			
" " 486	"			
강남구 서초동 63의 10	박춘화외 2			
서대문구 연희동 151의 86	장 삼 구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136의 1	세 신 실 업	근저당
강남구 방배동 345의 3	손 인 수	강남구 양재동산 17의 8	남부단위농협	지상권 근저당권
용산구 갈월동 6의 5	김 덕 기			
마포구 연남동 570의 16	권우진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산 16의 26	엄 금 순			

종건의 토지				환지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평)	구획번호	지번	면적(평)
강남구서초동		채비지		445	445-2	104.2
"				446	446-1	148.3
"				"	446-3	64.1
"				450	450-2 (개)	74
"				"	450-2 (나)	78
"				"	450-2 (다)	100.3
"				"	450-1	259.7
"				449	449-1	90.5
"		채비지		451	451-1	208
"		공원		449		300
"		채비지		444	444-2 (가)	56.7
"	산 174-4	임	273	703	산 174-4	145.5

○ 토지조서 (일반지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강남구 서초동	967 - 89	대	225
"	" - 6	"	236
"	" - 93	"	289
"	" - 5	"	612
"	" - 94	"	247
"	" - 85	"	231
"	" - 86	"	235

소 유 자		이 해 관 리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서초동상호 A.P.T 4동 1202	차 민 도			
성북구삼선동 5가 73	최 한 갑			
• 장위동 219의 189	권 정 자			
강남구역삼동산 75의 44	임 종 서			
•	•			
동작구동작동 307 반포 APT 98동 305호	홍 기 성			
성동구송정동 73의 609	김무웅외 3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동 307 반포 APT 3동 304호	조낙현외 1			
서울특별시				
성북구보문동 1가 3의 1	박 봉 한			
• 14의 16	김문섭외 2			
소 유 자		이 해 관 리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악구봉천동 961의 3	박 영 택			
• 상도동 159의 78	이 진 원		강남구청	압 류
영등포구여의도동 1-893 한양 A.P.T D동 301호	남 일 규			
강남입구점동 193-3 현대 A.P.T 76동 1004호	김 성 진	중구남대문로 2가 111의 1	한국상업 은행	지상권, 근저당권
종로구명륜동 1가 7의 1	양 승 학			
동대문구회기동 60의 65	윤 인 자			
중구회현동 1가산 1의 2	김 영 희			

소 개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강남구 서초동	967 - 81	대	261
"	967 - 2	"	231
"	967 - 7	"	731
"	산 176-22	임	3,570
"	967 - 1	대	496
"	967 - 83	"	499
"	967	"	430
"	968 - 6	건	830
"	968 - 5	"	579
"	968 - 3	"	1,630
"	산 176-2	임	5,157
"	968 - 4	건	430
"	967 - 14	대	314
"	967 - 79	"	549
"	967 - 11	"	284
"	967 - 40	"	238
"	967 - 39	"	205
"	967 - 8	"	863
"	산 172-1	임	9,893
"	산 174-2	"	5,431
"	967 - 90	도 로	61
"	산 176-20	임	4,542
"	967 - 91	대	313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등포여의도동 1-893 한양 APT 다동703호	전희령			
영등포여의도동 1-123 광장 A.P.T 10동 505호	허돈			
강동구신호동 167의 16	이찬재의 2			
봉산구갈월동 6의 5	김덕기			
중구회현동 1가산 1의 2	이내해	중구남내문로 2가 10의 1	서용신	지상권 근저당권
성북구안암동 3가 78의 15	이갑열의 3			
중구남창동 46의 13	유익상			
마포구신수동 309	김재길의 1			
성동구광장동삼 21위커힐 A.P.T 32동 502호	김영삼			
강남구서초동 986	이영록			강남구청 압류
• 역삼동삼 76의 87	이종욱의 1			
성동구광장동삼 21위커힐 A.P.T 32동 502호	김영삼			
성북구장위동 246의 175	문장진			
영등포구여의도동 1-893 한일 APT 10동 411호	이종식			
관악구신림동 50의 8	마규화			
서대문구연희동 115의 38	김종배			
도봉구수유동 478의 12	김부현의 3			
동작구동작동 307	신영환의 2			
서대문구연희동 200의 28	정규삼			
성북구성북동 14의 16	김문섭의 2			
• 58의 3	이복만의 3			
서대문구갈현동 20의 7	한봉식			
강남구서초동 967의 91	최동수	봉산동부이촌동 300의 1 한강연선 APT 28동 404호 중구을지로 1가 50	정진석 웨인스맨 은	소유권가등기 근저당권

소 재 지	지 번	지 득	면 적 (㎡)
강남구 서초동	967 - 02	대	284
"	" - 4	"	678
"	" - 84	"	175
"	" - 87	"	175
"	" - 80	"	231
"	" - 88	"	176
"	" - 78	"	400
"	" - 75	"	179
"	" - 76	"	175
"	" - 65	"	152
"	" - 64	"	169
"	" - 10	"	258
"	" - 58	"	152
"	" - 57	"	195
"	" - 50	"	175
"	" - 62	"	172
"	" - 48	"	33
"	" - 77	"	264
"	" - 67	"	165
"	" - 60	"	169
"	" - 63	"	169
"	" - 73	"	188
"	" - 69	"	188
"	" - 30	"	188
"	" - 37	"	192
"	" - 72	"	182
"	" - 41	"	112
"	" - 66	"	50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서초동 967 의 92	김 손 영	중구올지로 1 가 50	제일은행	근저당권
종로구명륜동 1 가 7 의 1	양 승 학			
경북봉화군소천면대현리 82	예 병 길			
강남구서초동 967 의 87	조 남 회			
" 967 의 80	이 경 회	중구충무로 1 가 53 의 1	제일은행	근저당권
남산구이태원동 176 의 2	이 영 국			
강남구서초동 967 의 78	박 찬 영	중구남대문로 2 가 130	한일은행	근저당권
" 967 의 75	장 근 진	중구태평로 1 가 61 의 1	한국주목	"
" 967 의 76	오 회 덕	"	"	"
" 967 의 65	박 농 진	중구남대문로 2 가 130 중구태평로 1 가 61 의 1	한일은행 한국주목	"
" 967 의 64	김 향 택			
종로구권농동 43	이 근 달		강남구청	압류
강남구서초동 967 의 58	최 정 애			
성북구정농동 402 의 166	권 영 보	중구태평로 1 가 61 의 1	한국주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강남구 서초동	967 - 55	대	205
"	" - 51	"	162
"	" - 34	"	195
"	" - 53	"	195
"	" - 54	"	195
"	" - 32	"	112
"	" - 74	"	66
"	" - 35	"	76
"	" - 70	"	102
"	" - 9	"	238
"	" - 82	"	264
"	" - 52	"	162
"	" - 61	"	185
"	" - 71	"	185
"	" - 44	"	162
"	" - 24	"	251
"	" - 3	"	175
"	" - 29	"	261
"	" - 56	"	195
"	" - 59	"	159
"	" - 25	"	169
"	" - 27	"	152
"	" - 43	"	169
"	" - 68	"	165

○ 건물조서

소 재 지	지 번	건물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강남구서초동	967-50	28.6	서울특별시	
"	"-62	23.87	"	

소재지	지번	건물면적 (평)	소유자	
			주소	성명
강남구서초동	967-48	49.88	서울특별시	
	-77			
"	967-67	23.87	"	
"	967-60	23.87	"	
"	967-63	23.87	"	
"	967-73	28.6	"	
"	967-69	23.87	"	
"	967-30	28.6	"	
"	967-37	23.87	"	
"	967-72	23.87	"	
"	967-41	23.87	"	
	-66			
"	967-55	28.6	"	
"	967-51	23.87	"	
"	967-34	28.6	"	
"	967-53	28.6	"	
"	967-54	23.87	"	
"	967-32	23.87	"	
	-74			
"	967-35	23.87	"	
	-70			
"	967-9	28.6	"	
"	967-82	38.65	"	
"	967-52	28.6	"	
"	967-61	23.87	"	
"	967-71	28.6	"	
"	967-44	23.87	"	
"	967-24	28.6	"	
"	967-3	45.87	"	

이 해 관 제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번	건물면적 (평)	소유자	
			주소	성명
강남구서초동	967-27	65.48	서울특별시	
"	967-56	28.6	"	"
"	967-59	23.87	"	"
"	967-25	28.6	"	"
"	967-27	23.87	"	"
"	967-43	28.6	"	"
"	967-68	23.87	"	"
"	967-88	26.07	용산구이태원동 176의 2	이영국
"	967-58	23.87	강남구서초동 967의 58	최정대
"	967-57	28.6	성북구정릉동 402의 166	권영모
"	967-75	28.6	강남구서초동 967의 75	장근진
"	967-84	45.53	경북봉화군소천면대현리 82	예병길
"	967-76	28.6	강남구서초동 967의 76	오희덕
"	967-64	23.87	" 967의 64	김형택
"	967-65	23.87	" 967의 65	박봉진
"	967-78	59.37	" 967의 78	박한영
"	967-4 -94	124.4	종로구명륜동 1가 7의 1	양승학
"	967-92	54.91	강남구서초동 967의 92	김순영
"	967-91	48.36	" 967의 91	최동수
"	967-80	46.35	" 967의 80	이경희
"	967-10	49.63	" 967의 10	이근달
"	967-87	43.56	" 967의 87	조남희
"	987-1	24.79	" 987의 1	이대성
"	987	11.45	" 987	이복남의1
"	987-3	7.01	관악구곡석동산 91	송갑철
"	987-10	8.68	서대문구충정로 2가 40	이재근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중구 태평로1가 61의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중구 태평로1가 61의1	한국주택은행	.
중구 소공동 76	한일은행	.
중구 남대문로2가 130	한일은행	.
중구 을지로1가 50	제이스맨헛턴은행	.
용산구동부이촌동 300의101 한강맨션 APT 28동 404호	정진석	청구권가등기
중구 을지로1가 50	제이스맨헛턴은행	근저당권
중구 중무로1가 53의1	한일은행	근저당권
	강남구청	압류

<p>◎ 서울특별시 공고제 3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허가를 취소</p>	<p>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2. 1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1. 허가번호	제 1001 호	제 1002 호
2. 허가일자	74.11.28	과 동
3. 제조업체	(주) 신명전기	과 동
4. 소재지	서울영등포구양평동 5 가 11	과 동
5. 대표자	김 회 목	과 동
6. 규격번호	KSC4 202	KSC4204
7. 품 명	저압 3 상유도전동기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일반용)
8. 중류등급	200 V 4 극 B 중 보통중형 밀폐형 0.2, 0.4, 0.75, 1.5, 2.2, 3.7kw	100 V 4 극 A 중분상기동형 개방형 0.2kw 100 V 및 220 V 4 극 A 중전면 서기동형, 개방형 0.4, 0.75kw
9. 취소사유	자진 반납	과 동
10. 취소일자	81.2.16	8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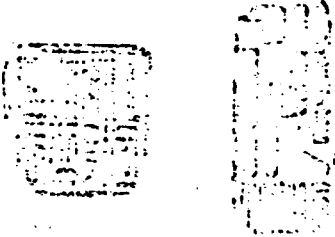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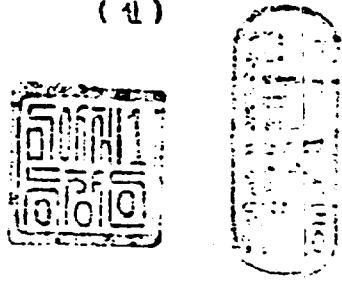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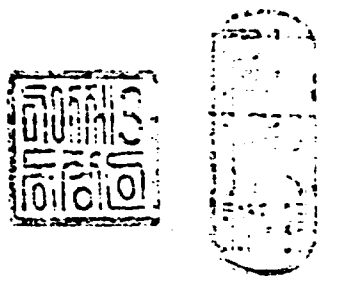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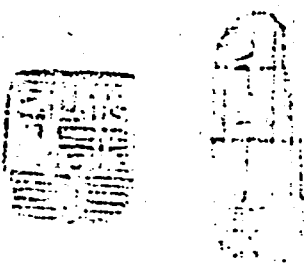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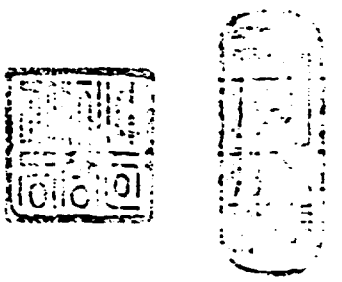
<p>◎ 서울특별시 공고제 39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일부준공공고</p> <p>1. 서울특별시 교시제 334 호 (78.7.5) 및 동고시 제 348 호 (79.7.28)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492 호 (79.11.26) 로 시행자 명 의 변경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일부</p>	<p>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p> <p>2.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청 강남구 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2. 1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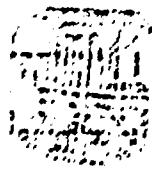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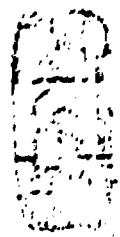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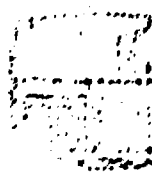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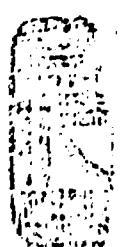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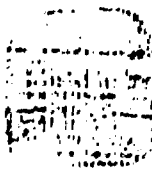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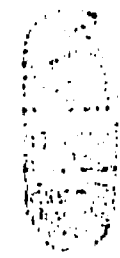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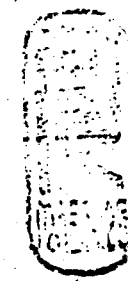
<p>1. 사업시행지 : 서울강남구양재동 539 의 25 필지</p> <p>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신설</p> <p>3. 도시계획사업시행자 : (주)천일여객자동차 대표 박남수 (주)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 박남규</p> <p>4. 사업기간 : 1979.10.20- 1980.12.31</p> <p>5. 사업시행인적 : 26,142 명 (7,908 명)</p> <p>6. 급화순공면적 : 24,302 평 (7,351 평)</p> <p>7. 준공도면 : 생략</p>	<p>◎서울특별시공고제 40 호</p> <p>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p> <p>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1981. 2.16</p> <p>서울특별시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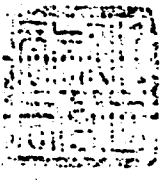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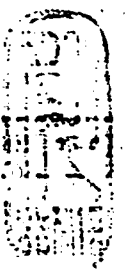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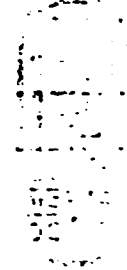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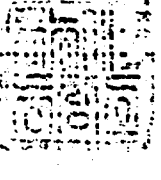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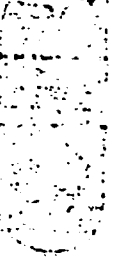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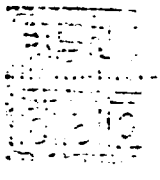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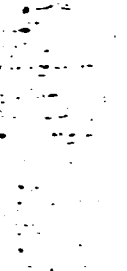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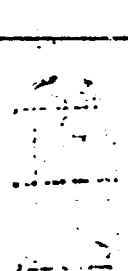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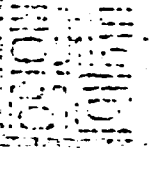

다 음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구분	허가번호	취소사유
동부전업사	구지영	동대문구장안동 148-4	배선기구류	가-3-2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4 조 위반

<p>◎서울특별시공고제 41 호</p> <p>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p> <p>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4 조에 의거한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서울특별시장</p>	<p>다 음</p>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구분	취소사유
대한전선공업사	이갑순	가리봉동 305-1	1-7-71	전열기구류제조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4 조 위반
현대전기공업(주)	이도일	가리봉동 산 70-4	1-5-52	소형단상 변압기류제조업	.

공 인 의 영			
인 영	(구) 	인 영	(신) 
공인명	미야지마 1 동장직인 직 인	공인명	미야지마 1 동장직인 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미야지마 3 동장직인 직 인	공인명	미야지마 3 동장직인 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미야지마 4 동장직인 직 인	공인명	미야지마 4 동장직인 직 인

인 영	(우)  	인 영	(선)  
공인명	수유계 1 동장직인 직 인	공인명	수유계 1 동장직인 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상문계 1 부장직인 직 인	공인명	상문계 1 동장직인 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상문계 2 부장직인 직 인	공인명	상문계 2 동장직인 직 인

인 영	(구)  	인 영	(신)  
공인명	공통제 1 동장직인 계 인	공인명	공통제 1 동장직인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공통제 2 동장직인 계 인	공인명	공통제 2 동장직인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중계 동장직인 계 인	공인명	중계 동장직인 계 인

사 령

㉠ 1981년 2월 16일
 도로구사회과 유 경 상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조정실 근무를 영한.
 대 봉 령

㉡ 1981년 2월 18일
 도로관리과 이 해 울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영함.

도로관리과 조 동 현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영함.

도로관리과 심 상 울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영함.
 서울특별시장

㉢ 1981년 2월 20일
 전남승주군농산과 윤 경 채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영함.

조정과 근무를 영함.
 서울특별시장

㉣ 1981년 2월 15일
 마포구보건소 이 수 자
 지방간호기사보

강남구보건소 고 승 남
 지방간호지원보시보

서대문구보건소 송 가 준
 지방간호지원보시보

영등포병원 신 충 용
 지방약무기사보시보

아동병원 고 창 설
 지방약무기사보시보

강남병원 백 순 애
 지방약무기사보시보

아동병원 임 정 초
 지방약무기사보시보

보건연구소 정 현
 지방보건연구사보시보

보건연구소 박 형 언
 지방보건연구사보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지원보시보 (r선)	이 정 령	은평구 지방화공지원보시보	김 정 복
강동구보건소 지방보건지원보시보 (r선)	김 방 자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보시보	김 중 완
강동구보건소 지방보건지원보시보 (병리)	홍 원 향 서울특별시장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보시보	하 병 호
◎ 1951년 2월 20일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보시보	김 승 훈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장 운 석	남부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지원보시보	송 상 영 서울특별시장
김포수원지 지방화공기사보시보	구 홍 서	◎ 1951년 2월 23일	
동작구 지방화공기사보시보	민 갑 석	체신부국정국국내우편과 행정수사	임 석 간
연료시험소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이 상 운	지방행정수사에 임한.	
상동구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성 인 봉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선유수원지 지방화공지원보시보	최 한 순	민방위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 지방화공지원보시보	조 성 관		